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관련 내용

1. 정보 접근성 준수 필요성

1. 법적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략)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 **제47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정보 접근성 준수 필요성

1. 법적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인증은 필수인가?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 내용에서 웹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명시된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가 장애인, 고령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과 애플리케이션 또한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 사실의 홍보, 마크 부착의 권리를 가집니다
- ✓ 웹 및 모바일 앱의 접근성 보장이 되어있다면 인증마크의 획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성 준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획득 시의 홍보 효과와 접근성 관련 인권위의 진정이나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차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최고의 방법이 품질인증 획득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업체에서 인증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 ✓ 애플리케이션 국가품질인증을 명문화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47조 1항의 시행일은 2019년 2월22일로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준비가 미비하여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애플리케이션 개편 및 개발을 기획하고 있는 모든 기관 및 업체는 이에 유의하여 향후 사업 진행에 접근성을 반영해야 이후 불필요한 예산 지출 등의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애플리케이션 품질인증 기관은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인증의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웹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국가품질인증
 시행 시 기존에 획득한 민간품질인증은 국가품질인증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정보 접근성 준수 필요성

2. 기타 필요성

인권위 진정 및 민원·소송 방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웹 사이트와 동일하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 및 소송의 대상이 됨

- ✓ 고령자 및 장애인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권위 진정 및 소송·민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단체 및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진정·소송 활동이 예상됨.
- ✓ 권리 구제 절차

진정접수	조사, 결정	시정권고	시정명령 확정	시정명령	전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
장애를 이유로 차	국가인원위원회에		시정명령에 대해	권고 불이행 시, 직	합의, 조정, 구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별 받은 장애인 또는 그 사실을 알 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서 국가인 원위원회에 진정	서 차별행위에 대한 상당한 근거나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진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 사 가능	합의, 조정, 구제 조치 등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명령서 를 송달 받은 날부 터 30일 내에 행정 소송 제기 가능	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 령 (시정명령은 서 면으로 하되, 이유 를 명시하여 교부)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진정인(피 해자), 피 진정인 (차별행위자), 법 무부장관에 전달	불이행시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고의성, 반복성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 OS 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접근성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만 제대로 접근성을 준수한다면 모든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 및 운용이 충분히 가능함.



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시장 현황

◉ 주요 금융사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사업 진행 상황

- ✓ ○○은행
 - 17~20년도까지 인증 없이 진단 사업만 진행
 - : ○○비대면 실명 및 제신고 진단, 대화형 뱅킹시스템 구축 진단, ○○샷 진단, ○○뱅킹 개편 & ○○리브 서비스 진단, ○○모든뱅킹 진단, ○○ Push 진단, 미니○○뱅킹 진단 등
 - 19년도에는 인증 획득 계획 : 주요 채널에 대한 진단 및 인증 심사 진행 및 예정
- ✓ △△은행
 - 전 채널 차세대 사업에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를 포함(현재 진행 중)
- ✓ ◇◇카드
 - 전 채널 접근성 인증 획득 목표, 애플리케이션 진단 및 인증 심사 진행 중
- ✓ □□카드
 - □□카드, □□리브메이트, □□앱카드, □□라이프샵 등 진단 및 인증 심사 진행
- ✓ 기타 인증 획득 및 준수사업 진행 금융사
 - 씨티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수협 은행 인증 획득,
 - 국민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국민카드, 삼성화재, 삼성생명, 신한카드, IBK캐피탈, SBI저축은행 등 진단 진행 및 예정

